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7. 9.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제4호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 경로당 시설규모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시에만 연면적을 제한하고, 경로당 등록 노인 인구수가 100명이 넘어 시설수요가 많은 지역은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설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둬.

2. 수정 주요내용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제4호와 중복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조항인 안 제2조제8호,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안 제2조제9호, 제9조제2항, 제15조를 수정함.
- 안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경로당의 규모는 신축 시에만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등록 노인 인구수 100명 이상인 경로당은 노인 인구 1명당 1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마을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포함한다)”를 “마을회”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연면적”을 “신축 시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로당 등록 노인수 1명당 1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을 정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마을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을회”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및 특례)”를 “(공동주택 내 적용제외)”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5조(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삭 제>
9. “추진위원회”란 마을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경로당 건립부지 확보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8. ----- 마을회----- ----- ----- ----- ----- ----- -----.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3조(시설기준)① 경로당의 규모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시설기준)① ----- - 신축 시 연면적 ----- ----- . 다만, 경로당 등록 노인수 1명당 1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지원조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 사업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 (생 략)

3. 리모델링 및 개보수 : 경로당 건축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는 경로당. 이 경우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가. 나. (생 략)

다. 입주민 공유(공동주택에 한한다)

라. (생 략)

② (생 략)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② 추진위는 마을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조건)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

가.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 라목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마을회 -----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및 특례)①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별표 제3호다목의 개보수비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인 아파트의 경로당은 별표 제3호나목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개보수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경로당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멸실을 포함한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경로당 연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8. “추진위원회”란 마을회가 추천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경로당 건립부지 확보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① 경로당의 규모는 신축 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경로당 등록 노인수 1명당 1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및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조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 사업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

가.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경로당 건축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시장 명의로 이전한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사업에 포함되어 건축 가능한 부지를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확보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방법으로
경로당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재건축 및 증축 :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시장 명의로 등
기된 경로당

3. 리모델링 및 개보수 : 경로당 건축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는 경로당. 이 경우 경로당 건축 부
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가. 시장

나. 마을회

다. 노인회(경로당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대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경로당 1개소 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재건축 : 2억원 이내

2. 증축, 리모델링 : 5천만원 이내

3. 개보수 : 2천만원 이내

제7조(비용부담)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체사업비의 20
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순위) ① 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정한 우
선순위에 따른다.

1. 신축 및 재건축

가. 노후·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의 재건축

나.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경로당의 대체 신축

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라.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증축 및 리모델링

가. 노후·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의 대수선 리모델링

나. 건립연도가 오래된 경로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다.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3. 개보수

가. 건립연도가 오래된 경로당

나.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

② 제1항제1호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건축 부지를 추진위 등에서 자체 확보하여 구미시로 기부채납한 경우, 국가 및 지방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립부지 확보 시, 그 외 순으로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려는 경로당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는 마을회가 추천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④ 추진위는 부지확보 등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

행하는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의 주체로서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위는 해당 읍·면·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계획서
2. 보조금 지원신청서
3. 건축물 소유자의 보조사업 동의서

제11조(보조금 집행) ① 추진위가 보조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 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추진위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
2.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3. 보조금 통장 사본 등

제12조(지원제외)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제13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4조(목적 용도변경 등의 제한) 시장 명목이 아닌 경로당을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건축물을 경로당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이나 처분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로당 신축 등 지원 사업대상(제4조 관련)

1. 신축(65세 이상 노인수가 읍·면은 10명 이상, 동은 2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한정한다)
 - 가. 하나의 행정 리·통 단위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 다만, 기존 경로당에서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며 노인수가 30명 이상인 자연부락일 경우 추가 건립할 수 있다.
 - 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된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재건축(등록된 경로당으로 한정한다)
 - 가. 경로당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 나.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 라.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경로당이 수용·철거되는 경우
 - 마. 경로당의 위치가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나 재해 등에 취약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증축 등(건축물 전체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정한다)
 - 가.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인인구 및 이용인원 증가 등으로 경로당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
 - 나.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골조 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 개보수 : 건립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